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03
------	------

2021. 12. 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1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기관 인사조직·경영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시행, 법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상시자문 수행,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현안 연구 등을 통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 지원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2016. 6)
- 조 직 : 1단 4실 2센터 / 정원 62명 ※현원 56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이사)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치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천 8백만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기본급) 5천만원,
 시·도등 지원사업비 2천 8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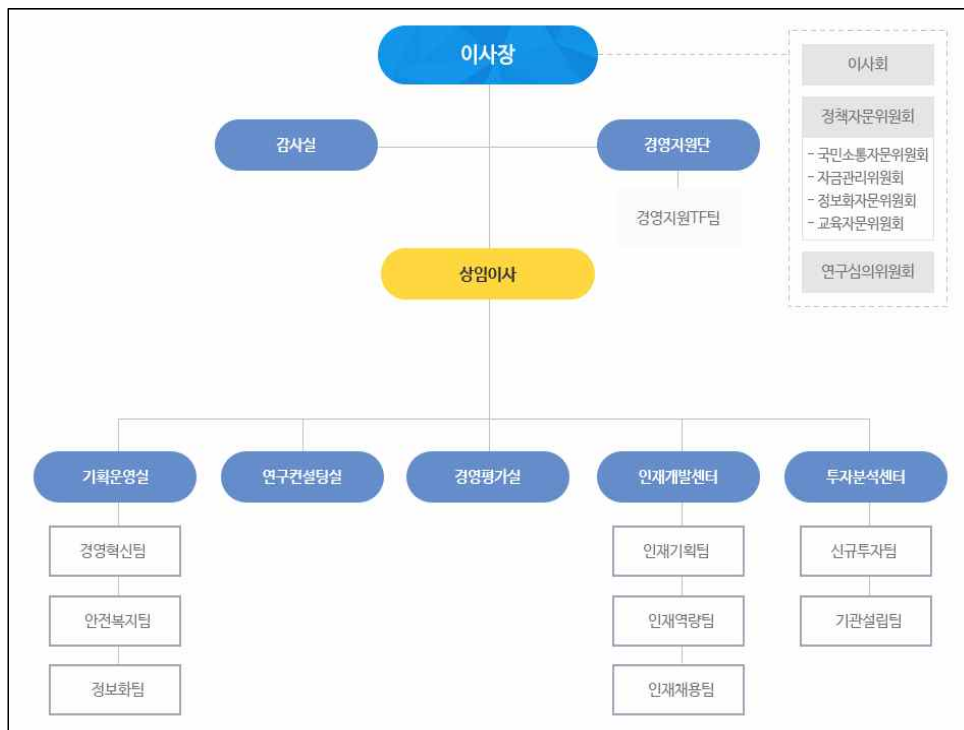
나.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 근거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지방자치경영협회, 1992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이하 “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¹⁾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되었음(제78조의4)¹⁾.
- 현재 조직은 1단 4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12명(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9명), 직원 56명(정원 62명), 전문연구인력 380명(상근연구인력, 자문위원, 경영평가단 등), 정원 외 상근자 14명 등이 근무하고 있음.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평가원 정관²⁾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중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며,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 2027~2028년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임.

<지방공기업 조직도>



-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타 시·도와 지방공기업(370개 기관)과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음.

2) 제18조(임원의 선임) ③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위촉직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 당연직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2.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기획조정(관리)실장 4~5인(윤번제로 선임)

다.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정성 검토

- 평가원의 2022년도 수입예산 163억 1천만원(추정치)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연금은 43억 8천만원(26.8%)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115억 3천만원(71%), 임대료 수입 등은 4천만원(0.2%)임.
- 전체 출연금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원 1천만원, 나머지 33억 7천만원을 지방공사·공단이 부담³⁾할 예정임.
-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수(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1.069(4구간, 4천 2백만원), 공기업수 32개(3구간, 3천 6백만원)에 해당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시·도별 출연금 산정기준>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1 (2구간-40%)	0.5이하 ~	24	1 (2구간-40%)	1~15	24
2 (기준구간)	0.5~0.7이하	30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20%)	0.7~0.9이하	36	3 (2구간+20%)	26~35	36
4 (2구간+40%)	0.9초과 ~	42	4 (2구간+40%)	36~	42

3) 201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매출액(50%), 직원수(30%), 자산(20%)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6억 1천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임.

<주요 시도별 출연금 배분금액>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 (A)	수	구간	금액 (B)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35명)의 인건비 5천만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 (정책연구, 컨설팅, 발전사업) 2천 8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임.

<서울시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계	78,000	
경상운영비	50,000	
인건비	50,000	
기본급	50,000	• 1,000,000천원 × 5% (전문직 35명)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경영평가, 컨설팅 지원,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35명) 인건비
시도등지원사업비	28,000	
정책연구	8,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포럼 등
컨설팅	8,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등
발전사업	12,000	• CEO 및 신규입사자, 온라인 등 무료교육

-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음.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서울시 출연금과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출연금 규모	시도 출연내역	서울시 출연내역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2019	4,217	1,020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 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시설공단) · 정책연구 : 총 35개 과제 수행(지방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등) · 컨설팅(서울시) : 23개 기관, 25건(양천구, 강서구, 등) · 역량강화 전문교육(서울시 무료교육)13개 과정 654명
2020	4,279	1,014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하수도본부,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시설공단) · 정책연구 : 총 32개 과제 수행(지방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방안 등) · 컨설팅(서울시) : 9개 기관, 9건(동작구, 강북구 등) · 역량강화 전문교육(서울시 무료교육)13개 과정 475명
2021 3분기	4,367	1,014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 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시설공단) · 정책연구 : 총 23개 과제 수행(올해 28개 과제 수행 예정) · 컨설팅(서울시) : 5개 기관, 5건(송파구, 성북구 등) · 역량강화 전문교육(서울시 무료교육)4개 과정 189명

-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제도 자문,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한 출연동의안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평가원 경영평가 수행방식의 검증과 역할 재정립을 권고받으며 부결되었음.

- 지난 3월,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원에서 시행한 경영평가가 소규모 기관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져 해당기관의 경영개선 의지를 낮출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규모 차이를 고려한 평가 체계 마련을 통보한 바 있음.
- 이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지방공기업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평가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이나 컨설팅 지원을 담아낼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903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통해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라. 출연의 필요성
 - 기관 인사·조직·경영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시행, 법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상시자문 수행,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현안 연구 등 통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 지원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1단 4실 2센터 / 정원 62명 ※현원 56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치도



청사현황



위치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기본급) 50,000천원,
시·도등 지원사업비 28,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김동규 (☎2133-6779)